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7. 10. 1.	개정 2010. 5. 19.	개정 2020. 2. 12.	개정 2026. 6. 16.
-----------------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입학관련 기본계획(입학전형요강 주요사항)
2. 입학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3. 우수 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
4. 입학홍보에 관한 사항
5. 입학전형유형 · 전형자료 · 자격기준 · 사정방법 · 전형일정 · 모집인원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6. 수험생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7. 기타 입학과 관련한 총장의 심의요청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원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위원회 내에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2인을 포함하는 5인의 특별전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전형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부원장이 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이의신청 및 전형과정의 하자)

- ① 위원회가 수험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 ② 입학전형관리위원이 전형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원회와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2010. 5.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6.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